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44
----------	-------

발의연월일 : 2026. 1. 30.

발 의 자 : 김선교 · 김성원 · 김상훈
최보운 · 이현승 · 박덕흠
구자근 · 김위상 · 윤상현
최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버섯은 식이섬유 등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건강식품이자 미래 식량자원으로서 국내 생산액이 약 7,300억 원에 이르고, 시장 규모 또한 1조 원을 상회하는 등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아울러, 글로벌 버섯 시장은 연평균 4.7% 이상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최근 비건 식품, 대체식품 및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 등 신산업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 또한 매우 매우 높은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버섯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이 부재하여 정책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버섯배지 및 재배 후 배지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농가에 과도한 처리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기준의 불명확성과 농지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농가의 권익이 침해되고 산업의 현대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 전문인력 양성, 버섯배지의 안정적 수급과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버섯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버섯, 배지, 버섯산업 및 버섯생산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육성 목표, 기술 개발, 배지 수급 등을 포함한 버섯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과 버섯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버섯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버섯생산자 및 관련 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대학

·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버섯생산자로 하여금 버섯의 품질 등을 표시하게 할 수 있고 버섯 재배 농가의 생산기반시설 정비시설의 지원, 재해예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 버섯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 및 가공식품의 시장 개척, 홍보, 세계화 촉진을 지원하고, 공공기관 및 학교급식에서 지역 생산 버섯을 우선 구매하거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수급 안정을 지원하고 유해한 배지의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며, 배지오염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

자. 배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배지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하거나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함(안 제23조).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버섯산업의 발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버섯”이란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새송이, 송이, 표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균류를 말한다.
2. “배지”란 인공적인 조건에서 재배하는 버섯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등을 함유한 물질로서 단일품목으로 직접 사용되거나 다른 배지의 원료로 혼합되어 사용되는 톱밥, 옥수숫대, 사탕무박, 참나무, 뽕나무, 누에 등 곤충류, 면실박, 면실피, 밀짚,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산업”이란 버섯 및 배지를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버섯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버섯생산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서 버섯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버섯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체계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버섯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버섯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버섯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버섯 재배와 배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버섯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버섯 소비 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농업상황에 맞는 버섯산업발전 및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를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버섯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과 버섯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버섯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연구
2. 버섯의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3. 버섯을 이용한 제품 개발
4. 그 밖에 버섯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버섯생산자 등 버섯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버섯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전문인력 양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탁할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지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방법 및 지정 취소·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버섯의 품질 등의 표시 및 품질인증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버섯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버섯생산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섯의 상태 등에 따라 품질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안정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생산자 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버섯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지원, 재해예방 시설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품질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버섯의 생산 촉진에 필요한 정책
2. 버섯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대상국가 기준에 적합한 가

공공정 등의 연구·조사

3. 버섯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4. 개발된 품질 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5. 그 밖에 버섯의 품질향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판매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 및 버섯을 활용한 식품 등의 판매확대를 위하여 시장개척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5조(버섯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의 이용 확대 및 버섯을 활용한 식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버섯과 버섯을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16조(세계화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산업의 육성, 버섯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버섯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버섯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해당지역 또는 소재지의 버섯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교급식 등의 이용촉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버섯 및 버섯식품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지역 내의 학교급식·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및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 버섯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배지 수급안정 및 품질관리 등

제19조(배지의 수급안정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배지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버섯생산자 단체가 배지를 수입 및 수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배지의 수입추천 등) 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 양허표(讓許表)상의 시장접근물량(市場接近物量)에 적용되는 양허세율(讓許稅率)로 배지를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지의 수입추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버섯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배지, 배지별 추천물량, 추천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배지의 용도 외 판매금지) 누구든지 수입한 배지를 버섯 재배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조·수입 등의 금지) 배지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인체 또는 동·식물에 유해하거나 버섯 생산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배지오염우려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배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품질검사) ① 배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배지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배지오염우려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배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배지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배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해당 배지의 검사일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항목 및 검사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폐기 등의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배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배지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공급의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배지를 회수·폐기, 그 밖에 품질 및 안전상의 위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5조(자료제출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버섯생산자 또는 버섯산업을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버섯산업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버섯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1조에 따라 수입한 배지를 버섯 재배 용도 외의 목적으로 판매한 자
2. 제22조에 따른 배지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배지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제30조(벌칙) 제24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